

#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2023년 1월 18일

운영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의안번호: 2023 - 19

나. 발의자: 이종숙 의원 외 9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 
운영위원회 회의 상정·의결(2023. 1. 18.)

### 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 
‘원도심활성화추진단’의 의회 소관 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‘원도심활성화추진단’의 사무를 도시·교통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함  
(안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, 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취지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(2023.1.1. 시행)에 따라 ‘원도심활성화추진단’이 신설되어 의회에 그 소관 위원회를 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 개정내용

- ‘원도심활성화추진단’ 사무의 소관을 도시·교통위원회로 정함. (안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)

### 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‘원도심활성화추진단’의 사무에 대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‘원도심활성화추진단’의 사무에 대한 의회 소관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.
- 덧붙여, ‘원도심활성화추진단’의 사무의 성격으로 볼 때 도시·교통위원회 소관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※참고 :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업무

- 제10조의2(원도심활성화추진단)  
① 부구청장 소속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둔다.  
②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 
1. 원도심 활성화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
2.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- |   |
|---|
| <p>3.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의 총괄에 관한 사항</p> <p>4.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관한 사항</p> <p>5. 민관합동 협업체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6. 구민 소통을 위한 조직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[본조신설 2022.12.28.]</p> <p>출처: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10조의2(원도심활성화추진단)</p> |
|---|

- 또한, 부칙 제2조를 통해 본 개정안의 시행 전 ‘원도심활성화 추진단’의 사무를 도시·교통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‘소급입법금지의 원칙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타당하고 판단 됨.
- 다만, ‘소급입법금지’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,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향후 조례의 제·개정 시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처리 및 심사 시 통합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## 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